

시험기관의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(제10조의6 관련)

1. 시설: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각 1실 이상 갖추어 것

가. 사무실

나. 실험실

다.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위한 전처리실[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공정에 따른 시험(試片)제작 및 건조실로서 다른 물질의 오염 등 간섭이 없어야 한다]

라. 건축자재 보관실

2. 장비: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갖추어 것

장비	수량 (단위: 대)
가. 방출 시험 챔버 시스템(공기공급장치, 공기정화장치, 항온항습장치, 온습도모니터링 장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)	1
나.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용 소형챔버(20L 용량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인 것)	4
다. 유량조절장치(Mass Flow Controller)가 내장된 시료채취용 펌프	4
라. 소형챔버 건조용 오븐(260℃ 이상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)	1
마. 가스크로마토그래프/질량분석기(GC/MSD)	1
바. 액체크로마토그래프/자외선가시광선검출기(HPLC/자외선-VIS)	1
사. 가스크로마토그래프용 열탈착(Thermal Desorption) 장치	1
아. 고체흡착관 클리너(Tube Conditioner)	1
자. 0.001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	1
차. 초음파세척기	1
카. 초순수제조장치(3차 증류수 제조가 가능한 것)	1
타. 시료보관용 냉장고(4℃ 이하 보관이 가능한 것)	1

3. 기술인력: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 1명 이상 갖추어 것

기술인력	해당 분야·전공
가. 박사 또는 기술사	환경공학, 폐기물처리, 수질환경, 대기환경, 화학공학,
나. 기사	

다. 산업기사	공업화학, 보건학, 건축공학, 산업위생 등 관련 분야
라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	환경학, 환경공학, 환경위생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유기화학, 생화학, 건축공학, 기계공학, 농화학, 물리학, 보건학, 의학, 화학 등 관련 전공

비고

1.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위 표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2.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3. 산업기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을 졸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5.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실내공기질 관련분야,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분야 또는 건축자재 시험 분야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.